의정정보

도민과 소통하는 공감의정
발로 뛰며 찾아가는 실천의정
슬기로운 지혜로 변화를 선도하는 창조의정

11

2017-11호

- **최근 타시·도 제·개정 조례**
  - 인천광역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 조례 등 6건
- **최근 기초 자치단체 제·개정 조례**
  -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등 5건
-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 소방공무원 보건 복지 향상 방안 마련 등 3건
- **타 · 시 도 의회 주요동향**
  - 대구광역시의회 전통시장 활성화 다각도로 모색되어야! 등 4건
- **최근 제·개정 법령**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등 3건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

Contents

최근 타 시 · 도 제 · 개정 조례

▶ 인천광역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 조례 (5)
▶ 광주광역시 공용차량 공유 조례 (8)
▶ 경기도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12)
▶ 세종특별자치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14)
▶ 전라북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17)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초학력 향상 지원 조례 (19)

최근 기초자치단체 제 · 개정 조례

▶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22)
▶ 대구광역시 동구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25)
▶ 구미시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7)
▶ 여수시 아파트 경비원의 고용유지 및 창출 촉진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 (30)
▶ 안동시 4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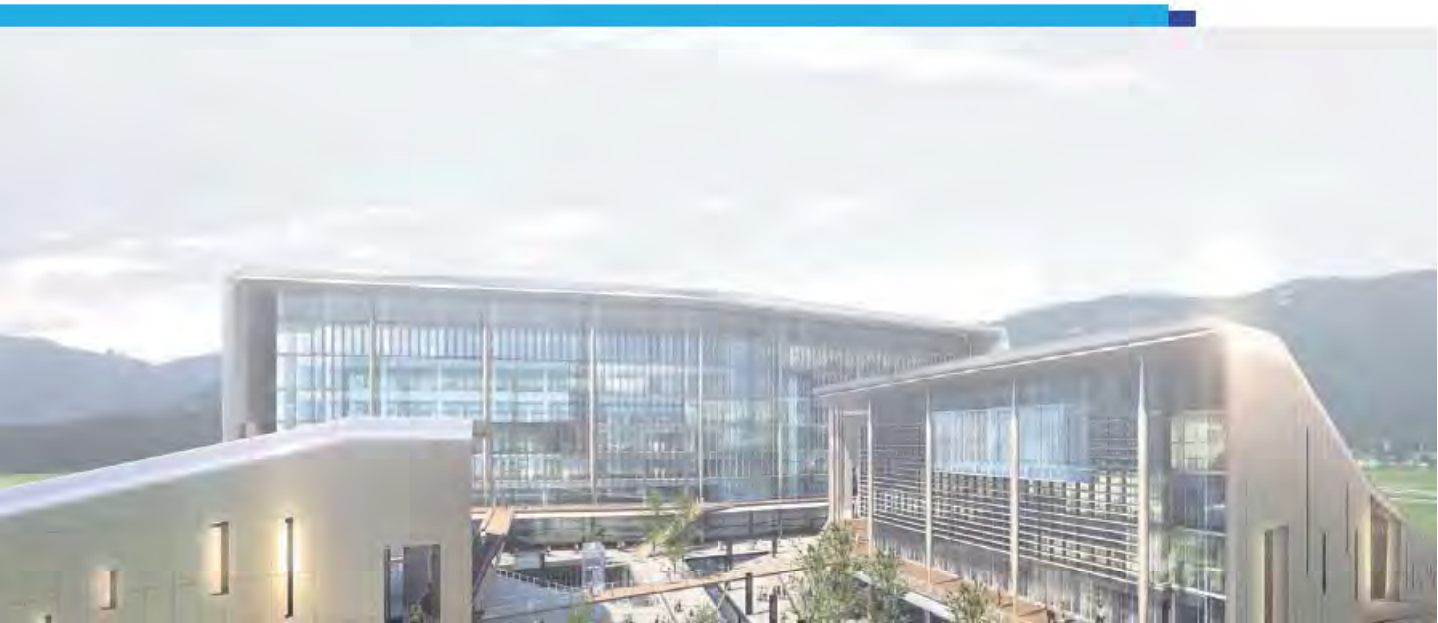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 소방공무원 보건 복지 향상 방안 마련 (36)
▶ 아산지역 마한 · 백제 문화재 활용방안 구상 (45)
▶ 기지시줄다리기 세계화 마케팅 전략 수립 (51)

타 시 · 도 의회 주요 동향

▶ 대구광역시의회 전통시장 활성화 다각도로 모색되어야! (59)
▶ 울산광역시의회 '2017년 민간단체 대표 초청 간담회' 실시 (61)
▶ 경상남도의회 사회복지연구회 세미나 개최 (63)
▶ 2017 제주교육포럼 정책토론회 개최 (65)

최근 제 · 개정 법령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68)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69)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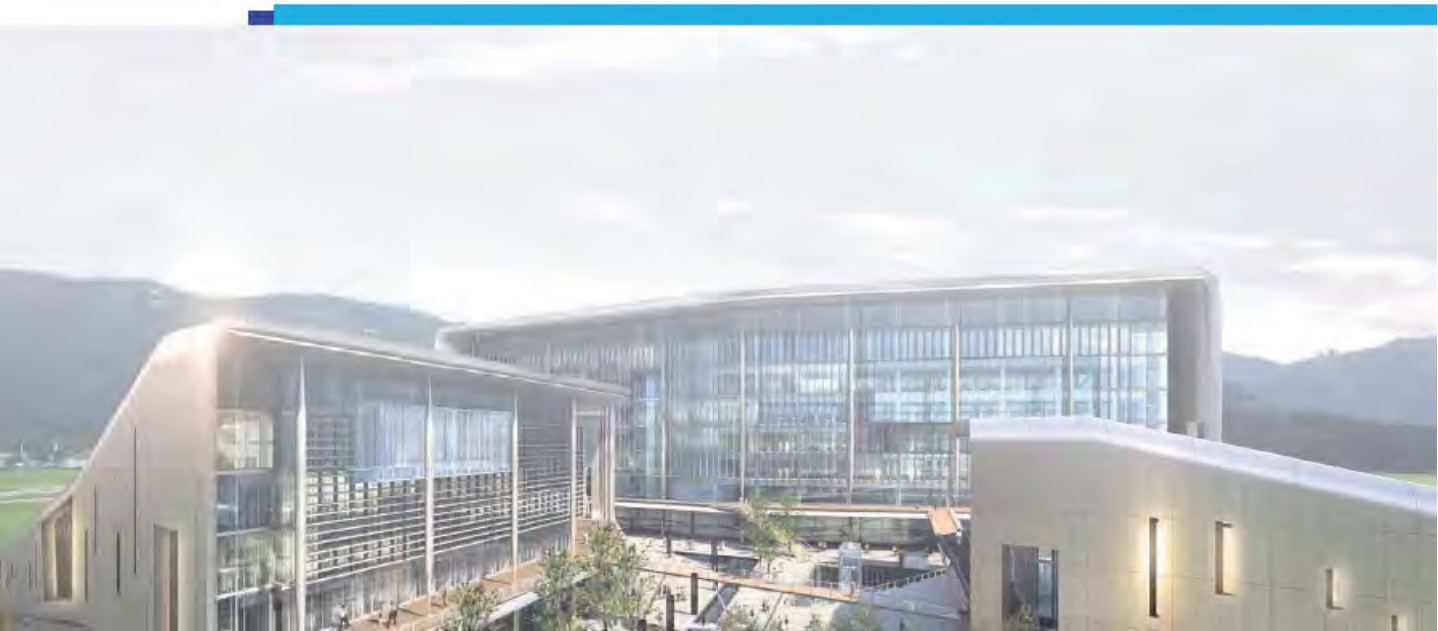

최근 타 시·도 제·개정 조례

1. 인천광역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 조례

[시행 2017.1.1.] [인천광역시조례 제5722호, 2016.11.14., 일부개정]

□ 주요목적

공정무역을 지원·육성하고 시민들의 윤리적 소비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 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정무역"이란 대화와 투명성, 상호존중에 입각하여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대안무역으로서 특히 제3세계(북한포함) 생산자와 노동자에게 보다 좋은 무역조건을 제공하고, 이들의 권리를 보장해 줌으로써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무역을 말하며, 제3세계 공정무역과 대북 착한무역을 총칭하여 공정무역이라 한다.
2. "공정무역단체"란 제6조에 따라 심의를 거쳐 인천광역시장이 선정한 비영리사업을 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착한무역"이란 비영리를 목적으로 북한과 하는 무역을 말한다.
4. "공정무역마을"이란 공정무역 상품을 사용하고, 지역사회에서 공정무역 상품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역 등을 말한다.

제2조의2(기본원칙) 인천광역시는 공정무역 지원 및 활성화 시책을 다음 각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한다.

1. 공정무역 이해관계자 상호 간의 신뢰와 존중을 제고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 구축
2. 공정무역운동 활성화를 위한 시민의 자발적 참여 장려
3. 공정무역 제품 소비 촉진을 위한 공정무역제품 구매 접근성 제고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공정무역단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의2(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중심이 되는 공정무역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공정무역사업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의3(계획 수립) ① 시장은 인천광역시 공정무역사업 활성화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 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정무역의 현황과 전망
2.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와 방향
3. 공정무역의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4. 공정무역 민·관 협력 체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공정무역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범위) 시장은 공정무역단체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행정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정무역제품 공공구매 활성화 사업
2. 공정무역 마케팅 사업
3.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한 교육, 홍보, 캠페인 사업
4. 공정무역 발전을 위한 국내외 교류 및 지원 사업
5. 공정무역마을 운동 사업
6. 그 밖에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삭제 2015-12-28)

제6조(공정무역단체 공모 및 선정 등) 시장은 필요한 경우 인천광역시공정무역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공정무역단체를 선정할 수 있다.

제7조(신청 및 접수) ① 인천광역시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정무역단체의 장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지원서를 제출한 공정무역단체의 장에게 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심의) 시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 청취 등을 통하여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도록 한다.

제9조(결과 통보)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단체를 선정할 경우 이를 해당 공정무역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회 구성 등) ① 제6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공정무역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정무역도시 추진에 따른 주요사업에 대한 자문 및 방향 제시
2. 시장이 공모하는 공정무역단체 선정 및 지원사항에 관한 심의
3. 착한소비 활동을 위한 홍보 등에 관한 사항

4. 공정무역 인증 마크 제정·개정 및 무상사용단체 선정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제11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3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공정무역단체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회의록) 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6조(보고 및 평가 등) ① 시장은 공정무역단체로 부터 매년 공정무역 인천광역시 보조금 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다.

② 공정무역단체의 장은 공정무역사업(보조금사업 포함) 완료 또는 종료 시 30일 내에 사업추진실적, 사업비 정산, 자체평가내용 및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③ 시장은 공정무역단체의 장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공정무역단체 지원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17조(별도의 계정) 보조금을 교부받은 공정무역단체의 장은 그 교부 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제18조(공정무역제품 우선구매) 인천광역시 산하 각급 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인천광역시 재무회계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공정무역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제19조 (공정무역 인증 마크 제정) ① 시장은 공정무역 인증 마크를 제정할 수 있다.

② 공정무역 인증 마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정무역 인증마크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단체를 선정할 수 있다.

④ 공정무역인증마크를 사용하는 단체가 사회적으로 민원을 야기하거나 공정무역 정신에 위반된 행위를 할 경우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권을 박탈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2. 광주광역시 공용차량 공유 조례

[시행 2018.3.1.] [광주광역시조례 제4983호, 2017.11.15., 제정]

□ 주요목적

광주광역시 공용차량을 사회적 약자와 공유하여 사회적 약자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공유와 소통으로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 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용차량" 이란 광주광역시와 그 소속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말한다.
2. "공용차량 공유 사업" 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또는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이나 토요일(이하 "공휴일등" 이라 한다)에 공무에 사용하지 않는 공용차량을 이 조례에 따라 시민에게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이용대상자" 란 공용차량 공유 사업에 따라 공휴일등에 공용차량을 자신이 직접 운전하거나 자신을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운전하도록 지정하는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3조에 따른 시민을 말한다.
4. "이용자" 란 이용대상자 중에서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공휴일등에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이용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용차량 공유 사업에 따라 공용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구성원
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이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가정의 구성원
5.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현재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고 있는 다자녀 가정의 구성원

제4조(공용차량 공유 사업 등) ① 시장은 공휴일등에 공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공용차량을 이용자에게 이동수단으로 제공하거나 여가활동에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용자의 여가활동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내 관광·문화 시설에 대한 관람권·이용권 등 문화적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제5조(이용 신청 등) ① 공용차량을 이용하려는 이용대상자는 시장에게 서면, 인터넷 또는 어플리케이션 신청 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공용차량 이용 신청서를 제출한 후, 제9조에 따른 이용자 준수 사항에 동의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공용차량 이용을 신청한다.

② 자치구청장이 그 자치구 주민 중 공용차량의 이용이 필요한 사람을 별지 제2호서식의 공용차량 이용자 추천서를 작성하여 추천하는 경우 시장은 그 사람에 대하여 공용차량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용 신청 및 제2항에 따른 이용 추천(이하 "이용신청등"이라 한다)은 이용대상자가 공용차량을 이용하려는 기간 첫 날의 5일(그날 오전 9시 이후를 말한다) 전부터 3일(그날 오후 6시까지를 말한다) 전까지의 기간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휴일등은 그 신청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이용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이용신청등의 기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변경된 이용신청등의 기간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제6조(이용의 승인 등) ① 시장은 이용신청등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 또는 서류를 확인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이용신청등을 한 사람은 같은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운전면허 정보
2. 제3조의 이용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 시장은 이용신청등을 한 사람이 다수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을 승인하며, 탑승 인원에 따라 배차하는 공용차량의 종류를 정한다.

1. 이용하려는 달에 이용신청등을 처음으로 한 자
2. 기초생활수급자
3. 차상위계층

③ 시장은 이용대상자가 공용차량을 이용하려는 날의 전날 오후 6시까지 이용신청등을 한 사람에게 이용승인 여부(불승인 시에는 그 사유를 포함한다)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동일한 이용대상자(제3조에 따른 이용대상자 1명이 공용차량을 이용한 경

우 같이 생활하는 다른 가족은 동일한 이용대상자로 본다)에 대하여 월 2회(공휴일등이 2일을 초과하여 연속하여 이어지는 경우 최대 5일까지를 1회로 본다)의 범위에서 공용차량 공유 사업에 따라 공용차량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이용 가능한 공용차량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월 2회 이상 이용한 사람의 추가 이용을 승인할 수 있다.

⑤ 이용대상자는 이용신청등이 있은 후 부득이한 사유로 공용차량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제5조제3항에 따른 이용신청등의 기간 내에 이용신청등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7조(운전자의 자격) ① 공용차량을 운전하는 이용자나 이용자의 지정에 따라 이용자를 위하여 운전을 할 사람으로 시장의 승인을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1. 이용할 공용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유효한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을 것
2.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사람이 아닐 것
3. 운전을 위한 특수한 장치 없이 일반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일 것
4. 이용하려는 날 현재 만 26세 이상인 사람일 것
5. 최근 2년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의 단서 또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형벌을 받은 이력이 없는 사람일 것. 다만, 시장이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형벌을 받은 이력이 있는 때에도 공용차량을 운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이용 승인 후 공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이용 승인을 취소하고 해당 공용차량을 입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이용자의 준수 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용자는 승인 받은 이용의 목적 범위에서 공용차량을 이용하여야 하며, 영리 활동 등에 공용차량을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운전을 하는 이용자나 이용자의 지정에 따라 이용자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은 제7조에 따른 운전자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이용자는 승인받지 않은 자에게 공용차량을 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이용자는 공용차량의 청결 상태를 유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 이용자는 운행 중 발생하는 유류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그 밖에 차량의 운행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5. 이용자는 교통사고 또는 교통법규 위반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시장

에게 알리고, 이용 종료 시 별지 제5호서식의 공용차량 이용자 교통사고 경위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이용자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보험 계약 약관에서 정한 자기차량 손해 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하며, 상해나 재물상의 손실이 보험약관의 배상 한도를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이용자가 초과분을 지급하여야 한다.
7. 이용자는 「교통안전법」 및 「도로교통법」 등의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8. 이용자는 공용차량을 이용한 후에는 입고 기한을 지켜서 해당 차량을 입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입고 기한을 위반하게 된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에게 통지한 후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 지체 없이 해당 차량을 입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이용자의 준수 사항 등 위반 시 조치) ① 시장은 이용자가 준수 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용 정지를 할 수 있다.

1. 제9조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영리 활동 등에 공용차량을 이용하거나 승인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운전하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이용 정지
2. 이용자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3개월 이하의 이용 정지. 다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이용을 정지한다.
3. 제6조제5항에 따른 취소 없이 차량을 이용하지 않거나, 같은 항에 따른 취소를 3회 이상 한 경우: 3개월 이하의 이용 정지
4. 제9조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이용자의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3개월 이하의 이용 정지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구체적인 조치 사항과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이의신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결정 등을 통지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이용신청등에 대한 불승인
2. 제7조제2항에 따른 이용 승인의 취소
3. 제10조에 따른 이용 정지

②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경기도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0.13.] [경기도조례 제5029호, 2015.10.13., 제정]

□ 주요목적

경기도 도로터널에 대한 안전시설물 설치 및 안전점검 실시에 관한 사항과 적정한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로터널 내 안전한 환경 조성 및 화재·사고·재난 등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주요 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터널"이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라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제1⋅2종시설물을 말한다.
2. "관리주체"란 「도로법」에 따라 경기도 지방도(국가지원지방도 포함. 이하 같다)의 도로터널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해당 도로터널의 소유자를 말한다. 이 경우 도로터널의 소유자와의 관리계약 등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책임을 진 자는 관리주체로 보며, 관리주체는 공공관리주체(公共管理主體)와 민간관리주체(民間管理主體)로 구분한다.
3. "공공관리주체"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을 말한다.
4. "민간관리주체"란 공공관리주체 외의 관리주체를 말한다.
5. "안전점검"이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으로 검사하여 시설물에 내재(內在)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정밀안전진단"이란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여 보수⋅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7. "유지관리"란 완공된 시설물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물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보수⋅보강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서는 관리주체가 공공관리주체 또는 민간관리주체인 도내 도로터널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제4조(환기·조명·소방시설 등의 설치) ① 관리주체는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2조에 따라 도로의 설계속도, 교통 조건, 환경 여건, 터널의 제원, 에너지 효율 등을 고려하여 환기시설 및 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화재나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교통에 위험한 상황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도로터널에는 화재감지기, 비상경보·방송설비, 유도표시판, 피난연결통로, 비상주차대, 물분무설비, 소화설비 및 소화활동설비, 비상전원설비 등의 방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의 기술기준에 따라 설치 및 유지·관리한다.

③ 관리주체는 도로터널 내의 일산화탄소 및 질소산화물의 농도를 규칙 제42조제3항의 농도 이하가 되

도록 하여야 하며, 환기 시의 터널 안 풍속이 초속 1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점검의 실시) ① 관리주체는 각 도로터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터널의 상태 및 노후화 등으로 인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전점검 주기를 강화하여 정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는 안전점검결과 이상이 있는 도로터널은 바로 정밀안전진단 · 보수 · 정비 및 사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도로터널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제2항에 따른 조치결과를 해당 실적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점검실시 평가 등)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실시한 도로터널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안전관리 보고서를 작성한다.

1. 도내 도로터널 현황 및 관리 인력 · 장비 현황
2. 주요 사고발생 현황 및 원인분석
3. 도로터널별 위험요소 평가에 따른 보수 · 보강 등의 유지관리 실시 또는 계획
4. 도내 도로터널별 사고관리체계 구축
5. 도로터널 안전관리 예산 계획
6. 그 밖에 도로터널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7조(인력 · 장비 등의 확보) 관리주체는 안전점검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안전점검 수행 인력과 휴대장비 · 접근장비 및 비파괴장비 등 도로터널의 특수성에 따라 적합한 안전점검 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8조(사고관리체계) ① 관리주체는 해당 도로터널의 자체 결함 또는 그 밖의 외부 요인으로 인한 각종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수습체계 · 요령 및 복구방법 등의 사고관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도로터널별 관리주체가 적절한 사고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있는지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 · 감독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적절한 사고관리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리주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민간관리주체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터널에 대한 사고관리체계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시정조치를 요구하여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계약 취소 및 파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예산 반영) 도지사는 도로터널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예산 반영을 할 수 있다.

4. 세종특별자치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 2017.11.10.] [세종특별자치시조례 제1091호, 2017.11.10., 제정]

□ 주요목적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세종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원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 내용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등을 전시·배치하거나 재배·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말한다.
2. "정원문화"란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활동과 그 소산을 말한다.
3. "시민정원사"란 식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관리 및 보전·전시하기 위하여 정원전문가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4. "정원박람회"란 정원문화 진흥 및 정원산업 발전 등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박람회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가 정원문화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정원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장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 정책의 기본방향

제4조(정원문화의 육성 등) ① 시장은 시민의 정원문화활동을 육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 및 제반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원문화시설 및 정원문화프로그램의 조성·개발·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정원도시의 조성) ① 시장은 관내 시민 누구나가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는데 힘써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별 문화적 특색을 살리고, 자연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민 복지의 증진) 시장은 모든 시민이 일상생활 가까이에서 부담 없이 정원문화를 향유하고, 시민주도로 정원문화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 정책의 추진

제7조(정원진흥실시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정원문화의 진흥 및 정원산업의 지원 등을 위해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정원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정원진흥실시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실시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단체에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반영하거나 별도의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8조(시민의 의견수렴) 제7조에 따른 정원진흥실시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시민 및 정원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9조(정원문화의 발굴·진흥 등) 시장은 우수한 정원문화의 발굴·진흥 및 정원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수집·보급 및 관리
2. 정원의 유지관리 및 전시
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
4. 국내외 정원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
5. 정원에 관한 자연학습, 행사, 강연회 및 박람회 개최
6. 정원에 관한 간행물 발간
7. 소식지, 언론 등을 통한 정원 관련 홍보 및 정보제공
8. 정원에 관한 콘테스트 및 시상
9. 정원 캠페인의 추진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민간정원의 개방) 시장은 정원법 제18조의5에 따라 관내 민간정원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제4장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시민참여의 지원

제11조(시민참여의 원칙) ① 정원을 조성하기 위한 시민들의 참여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 내에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자발적인 시민참여는 지역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간 교류를 활성화하여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며,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정서적으로 치유하는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

제13조(정원전문가의 양성) ① 시장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정원전문가 육성을 위

한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호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시민에게 시민정원사 인증서를 수여하며, 시민정원사의 활동을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정원사 인증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양성, 인증 및 시민정원사의 활동 등에 관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민정원사의 교육과정 및 인증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민간 교육과정의 지원) ① 시장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원 관련 전문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법인 및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을 받은 법인 및 단체에서 교육을 수료한 시민에게 시민정원사 인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제15조(시민정원사의 운용 등) 시장은 정원관련 사업에 시민정원사를 선발하여 운용하거나, 정원을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시민정원사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지역거점형 정원지원사업) ① 시장은 정원문화 진흥 및 정원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정원사업(이하 "지역거점형 정원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전개할 수 있다.

② 지역거점형 정원지원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지역 주민대상 정원관련 교육 및 컨설팅
2. 정원 관련 도서, 장비 및 용품 대여
3. 정원에 대한 자료 수집·보존 및 전시
4. 그 밖에 정원문화 진흥 및 정원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거점형 정원지원사업의 전문성·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정원 사업·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 및 단체에게 그 사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정원박람회

제17조(정원박람회의 육성) 시장은 시민 참여적이고 국제적인 정원박람회 육성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개발·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정원박람회 개최) 시장은 시민의 여가생활 향상과 정원산업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9조(박람회의 평가) ① 박람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박람회 시책, 개최성과 및 지원체계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그 공정성·객관성 등을 위하여 외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내부평가(자체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5. 전라북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시행 2018.3.1.] [전라북도조례 제4472호, 2017.11.10., 제정]

□ 주요목적

학생의 도박으로 인한 문제점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전라북도 학생이 건강한 사회에서 보다 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주요 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도박" 이란 게임이나 시합 또는 그 결과가 우연으로 결정되는 불확실한 사건에 내기를 거는 행위를 말한다.
3. "도박 예방교육"이란 도박의 위해성을 알리고 도박의 경각심을 일깨워, 성장하는 학생의 육체적·신체적·정신적 건강의 보호·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라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이 도박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예방하고 도박 폐해로부터 보호하여 학생이 건전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5년마다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생 도박 예방교육의 기본 목표에 관한 사항
2. 학생 도박 폐해 방지 및 완화에 관한 사항
3. 학생 도박 예방교육을 위한 교직원 교육에 관한 사항
4. 학생 도박 예방교육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도박예방교육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전라북도교육청 도박예방교

육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자문에 응한다.

1. 학생 도박 예방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학생 도박 예방교육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학생 도박 예방교육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학생 도박 예방교육 지원의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생 도박 예방교육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도박예방교육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전라북도의회 의원
2.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6.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초학력 향상 지원 조례

[시행 2017.11.20.]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1959호, 2017.11.20., 제정]

□ 주요목적

제주특별자치도 내 학생의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 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기초학력"이란 해당 학년의 교육과정에서 요구되는 일정한 수준의 읽기, 쓰기, 기초수학 등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학습능력의 성취수준을 말한다.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도교육감은 제주특별자치도 내 학생의 기초학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지원계획의 수립) ① 도교육감은 학생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기초학력 향상을 위하여 기초학력 향상 교육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
2.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
3. 기초학력 진단 및 실태조사
4. 기초학력 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교원 연수 방안
5. 심리상담, 학습진로상담, 가족상담 등의 상담지원 방안
6. 학부모교육과 정보제공 방안
7. 유관기관과의 연계지원 방안
8.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교육지원 우수사례 발굴 및 보급
9.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도교육감은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기초학력과 관련한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전문지식과 연구경험이 풍부한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지원 등) ① 학교의 장은 도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초학력 미달학생을 선별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기초학력 미달학생에 대하여 도교육감이 정하는 수업일수의 범위에서 체험학습 등의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경우 도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교원이 기초학력 미달 학생 교육지원을 위한 연수를 이수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도교육감은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초학력향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제4조의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교육지원 관련 시책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지원에 필요하다고 도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9조(재정지원) 도교육감은 학생의 기초학력 향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기초학력 진단 및 평가 시스템 연구·개발
2. 기초학력 미달학생을 위한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보급
3. 기초학력 미달학생을 위한 진단·상담·치유·학습 지원 프로그램 등의 제공
4. 그 밖에 기초학력 미달학생의 학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도교육감이 인정하는 사업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교육감은 기초학력 미달학생의 지원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기초학력지원센터 설치 및 기능) ① 도교육감은 기초학력 향상정책을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기초학력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기초학력지원센터는 기초학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중장기계획 및 정책의 연구, 개발평가
2. 기초학력 향상 모형개발과 보급
3.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연수 지원
4. 기초학력 미달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

③ 기초학력지원센터 운영 등에 관해서는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최근 기초 자치단체 제·개정 조례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시행 2018.1.1.] [서울특별시성동구조례 제1264호, 2017.11.23., 제정]

□ 주요목적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모자보건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출산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 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출산친화도시"라 함은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행복한 임신·출산·육아생활을 할 수 있는 출산친화적인 도시정책 및 사업을 운영하는 도시를 말한다.
2. "출산친화도시정책"이란 출산친화도시 조성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출산친화도시사업"이란 이 조례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모자보건법」,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수립·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임신·출산·육아생활에 영향을 주는 정책 및 사업에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출산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관련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성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을 포함한 관련 단체·기관 및 전문가가 참여하여 협력할 수 있는 지역협력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민의 임신·출산·육아생활에 맞춘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확충할 경우에는 임신·출산·육아생활을 하고 있는 가정이 해당 공공시설을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출산친화도시 정책 및 사업의 영향평가 결과 또는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산친화도시 조성 협의회의 제안 및 자문에 따라 지역 특성화 사

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5조(조성계획의 수립 및 평가 등) ① 구청장은 출산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하며,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출산친화도시의 기본방향, 추진목표 및 주요 정책과제
2. 출산친화도시의 추진체계, 연차별 추진계획 및 세부추진사업 목록
3. 출산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4. 그밖에 출산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② 출산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을 총괄하는 부서는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관련 교육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출산친화도시 사업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조성기준) 출산친화도시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준으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출산친화도시정책 및 사업의 협력 기반 구축
2.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기반 조성
3. 모자보건 및 아동복지를 위한 사회적 기반 조성
4. 보육지원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사회적 환경 구축
5. 출산친화적인 사회적 분위기 조성
6. 그 밖에 출산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기본사업) 구청장은 출산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출산장려 및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
2. 모자보건·건강증진사업
3. 가족친화활동 지원 사업
4. 일·가정양립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출산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협의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산친화도시 조성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출산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안 및 자문을 한다.

1.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조성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정책 및 사업의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
4.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제9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출산친화도시정책 총괄부서의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출산친화도시정책 총괄 부서장과 세부사업 추진 부서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출산친화도시정책 및 사업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1조(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장소·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출산친화도시 총괄부서의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비치·관리한다.

2. 대구광역시 동구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7.11.20.] [대구광역시동구조례 제1201호, 2017.11.20., 제정]

□ 주요목적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사망 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상부상조의 공동체의식을 실현하고자 함.

□ 주요 내용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고자" 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2.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란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3.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란 사망자의 연고자가 있음에도 연고자가 사회적·경제적·신체적 능력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하지 않는 경우 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시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민간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대상은 무연고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대구광역시 동구 관내에서 사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 기피하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방법) ①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은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지원이 곤란할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는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받는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비용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내용) ① 구청장이 무연고 사망자 장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의, 관, 상복, 염사, 그 밖에 장례에 필요한 용품
2. 사체 검안비,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 포함
3. 민간기관·비영리 단체와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

② 제5조제1항에 따른 현금 지원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급여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이웃사람 등(이하 "신청인" 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제6조제1항제3호의 민간기관·비영리 단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지원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업무대행) ① 구청장은 무연고 사망자의 시신인수, 화장, 봉안 등의 장례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기관 또는 비영리 단체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점검) ① 구청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지원금품을 지급받은 신청인 등이 지원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대행하게 한 경우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업무가 지원목적에 맞게 처리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제10조(환수)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8조에 따른 민간기관 및 비영리 단체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그 지원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지원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3. 구미시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7.11.17.] [경상북도구미시조례 제1266호, 2017.11.17., 제정]

□ 주요목적

구미시의 탄소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 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탄소소재" 란 탄소원료(원유·가스·석탄 등)를 이용하여 제조한 탄소섬유, 인조흑연, 활성탄소, 카본블랙 등을 말한다.
2.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이하 "탄소기술" 이라 한다)이란 탄소소재 자체 또는 탄소소재를 플라스틱 등과 융복합한 소재의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특성을 개선하는 것으로 중간재 및 제품의 연구개발과 생산, 시험·인증 및 표준화 하는 기술을 말한다.
3. "탄소산업" 이란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재 및 기술을 활용하여 우주·항공·국방·자동차·건설기계·조선해양·전기전자·신재생에너지·건설기계·일반산업 등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외 전·후방 산업을 말한다.
4. "탄소 관련 기업" 이란 탄소기술을 이용한 사업을 영위하는 국내외 기업으로 구미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구미시(이하 "시" 라 한다) 탄소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탄소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의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시의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탄소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탄소산업의 분야별 육성 시책에 관한 사항
3. 탄소기술의 개발·보급·확산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4. 탄소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5. 연구개발,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에 관한 사항
6. 탄소산업의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7. 관련 기업 유치, 창업보육 지원에 관한 사항
8. 탄소산업 관련 연구기관 등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장이 탄소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탄소산업의 육성) 시장은 탄소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탄소기술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 사업
2. 탄소산업 인력양성 및 창업보육 사업
3. 탄소기술 국내외 협력 및 마케팅 지원 사업
4. 탄소소재 부품 및 제품 신뢰성 평가·인증지원 사업
5. 탄소산업 신사업 발굴 및 육성 지원 사업
6. 탄소소재 부품 및 제품 보급 확산 지원 사업
7. 탄소산업 관련 기술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
8. 탄소산업 관련 기술협력 및 정보교류 지원
9. 탄소산업 기술 동향 및 수요조사 지원
10. 탄소제품 공공구매 등 지원
11. 그 밖에 시장이 탄소산업 육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업의 운영) ①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 경상북도,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 또는 단체
2. 그 밖에 시장이 탄소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②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따른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탄소산업의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미시 탄소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탄소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3. 탄소기술의 개발 촉진 및 상용화에 관한 사항
4. 탄소산업 육성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관련 기업의 애로사항 청취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탄소기술 비영리법인 육성 및 민간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탄소산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3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탄소산업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포상) 시장은 탄소산업 육성 및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기업·단체 또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 「구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4. 여수시 아파트 경비원의 고용유지 및 창출 촉진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

[시행 2017.11.22.] [전라남도여수시조례 제1305호, 2017.11.22., 제정]

□ 주요목적

지역사회가 함께 고령자인 아파트 경비원의 고용 유지 및 창출을 촉진함으로써 고용안정과 올바른 노동문화 정착을 통한 지역사회 통합과 사회안전망의 구축하고자 함.

□ 주요 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파트"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가목에 따른 주택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을 말한다.
2. "고령자경비원"이란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에 따라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55세 이상인 사람 중 아파트에서 근로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통합관제시스템"이란 아파트의 경비를 폐쇄회로를 통하여 관리하는 형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자경비원의 고용유지 및 창출과 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아파트입주민 및 지역사회 인식개선과 공감대 형성 사업추진
2. 고령자경비원 고용현황 파악 및 적절한 조치의 권고
3. 고령자경비원 일자리 창출 및 유지를 위한 지원사업
4. 고령자경비원 고용 유지 및 창출을 유인할 수 있는 사업 발굴
5. 그 밖에 고령자경비원의 인권·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추진

제4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민의 의결을 얻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아파트에 적용한다.

1. 고령자경비원의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해고회피 노력을 통한 고용유지
2. 통합관제시스템을 유인 등의 경비로 전환함으로써 고령자 경비원의 고용을 유지하거나 일자리 창출
3. 고령자경비원의 작업환경 및 임금 등의 근로조건 향상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는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둔 고령자경비원을 대상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고용보조금의 지원순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여수시 고령자경비원 고용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업무담당 부서장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제6조(지원) ① 시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아파트에 예산의 범위에서 고령자경비원의 고용 유지 또는 창출하기 위한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고용보조금은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아파트 경비원 평균연봉의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고용 유지 및 창출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한다.

③ 고용보조금 지원 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8조(지원결정)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한 지원 순위를 고려하여 고용보조금 지원 대상을 결정한다.

② 시장은 고용보조금을 지원받은 아파트의 관리주체가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고용 유지 및 창출계획서의 사업을 2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보고 등) ① 고용보조금을 지원받은 각 아파트 관리주체는 사업집행이 완료되면 보조금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용보조금의 예산집행 적정성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에게 고용보조금을 지원받은 아파트의 관리주체에 대하여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5. 안동시 4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7.11.17.] [경상북도안동시조례 제1296호, 2017.11.17., 제정]

□ 주요목적

지역경제를 선도할 4차산업 관련 산업과 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 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4차산업"이란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경제의 성장잠재력 향상 및 일자리·소득창출에 중심적 역할을 하는 핵심산업으로 제4조에서 정한 산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4차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4차산업 관련분야) ① 4차산업은 다음 각 호의 분야를 영위하는 사항으로 한다.

1. 사물인터넷(IoT) : 사물인터넷(가전제품, 모바일 장비, 휴대용 컴퓨터 등 각종 사물에 센서와 통신 기능을 내장하여 인터넷에 연결하는 기술)을 이용하여 자동차, 건강·주거환경 관리, 산업생산성 향상, 재난·재해예방, 환경·에너지관리 등에 활용 또는 이를 위한 기술적인 환경과 보안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2. ICT융복합 : ICT 관련 기술을 기존기술에 접목하여 기존 제품을 개선·혁신하거나 전혀 새로운 제품을 창출하는 일체를 말한다.
3. 빅데이터 :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를 통하여 공개정보 및 이용내역정보 등을 처리(수집, 생성, 저장, 조합, 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하여 생성되는 정보 및 이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을 말한다.
4. VR, AR : VR(가상현실)은 가상 세계에 접속하여 실제 세계처럼 시각, 청각 등의 감각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한 것, AR(증강현실)은 실제 존재하는 현실 공간에 홀로그램 등으로 가상물체를 겹쳐 보여 주는 것 등을 말한다.
5. 인공지능(AI) : 인간의 학습능력과 추론능력, 지각능력, 자연언어의 이해능력 등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실현한 기술을 말한다.
6. 3D프린팅 : 3D 프린팅과 관련된 장비·소재·소프트웨어와 같은 제품 관련 산업

과 출력서비스 · 컨설팅 등 서비스산업을 포괄한다.

7. 항공우주산업 :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2조에 따른 기업 및 무인항공기 · 무인비행장치 등을 말한다.

8. 중앙정부의 산업정책 기조에 따라 육성 · 지원하기로 한 분야

② 제1항에 따른 4차산업의 구체적인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4차산업 선정) 시장은 종합계획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충족하는 산업을 4차산업으로 선정한다.

1. 성장잠재력과 지역경제 성장에 기여도가 높은 산업

2. 지역혁신에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산업

3. 기술 · 지식집약성과 입지우위성이 높은 산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4차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외 4차산업 환경 변화

2. 4차산업 현황 및 성장 전망

3. 4차산업 추진방향 및 육성시책

4. 4차산업에 대한 기술 · 입지 · 인력지원 등 기업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4차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2항의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중앙정부 및 경상북도의 4차산업 정책 등 종합계획이 제2항의 내용을 포함한 경우에 한하여 제1항을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①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협의 또는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행계획의 수립 ·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4차산업 지원) ① 시장은 4차산업의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산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 ·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4조의 4차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지역 대학 및 관련기관 ·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지원할 수 있다.

1. 연구개발비의 지원

2. 연구개발 결과의 실용화를 위한 지원
3. 생산 제품의 판로 지원
4. 그 밖에 사업화 및 시장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4차산업 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4차산업과 관련된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안동시 4차산업 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4차산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경제계, 법조계, 학계, 금융계, 기업관련단체 등에 관련된 사람
2. 시의회 의원
3. 시 소속 공무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안동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안동시 4차산업진흥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4차산업 육성을 위하여 안동시 4차산업진흥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4차산업 관련 정보수집 · 조사 · 연구 · 교육 · 홍보
2. 4차산업 관련 국내외 교류 · 협력 사업
3. 4차산업 관련 기관과의 업무 협조
4. 4차산업 민간 활용 활성화 지원
5. 4차산업 교육 지원
6. 그 밖에 4차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소방공무원 보건 복지 향상 방안 마련

〈'17.10.25.(수), 15:00~17:00 /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대강당(5층) 〉

총 평

이번 토론회는 소방공무원의 보건 복지 향상 방안 마련을 위해 소방공무원의 소방 활동 중 발생하는 각종 재해에 대한 국내·외 사례를 소개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참석자 대부분은 소방공무원의 업무 현황과 현장 활동에서 발생하는 업무의 위험, 그리고 그에 따른 관련 질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 소방공무원의 보건 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및 관련 법령과 지침 등의 정비와 개선을 요구하는 등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 증진방안, 소방활동 중 발생하는 각종 재해에 대한 소방전문병원 건립의 필요성, 타 공무원에 비해 뚜렷한 수명 단축 등에 대한 우려 등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건복지 향상방안에 대한 토론의 장이 되었음.

주요 토론 내용

1 주제발표

<홍성현(충청남도의회 의원)>

❍ 소방공무원의 수명 단축의 원인과 정부의 미흡한 대책

- 첫째, 현장에서 발생하는 맹독성 가스에 의한 폐질환 및 이와 연계 유발되는 질병 발생
- 둘째, 긴급출동의 긴장성과 급격한 현장활동 등으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
- 셋째, 재난현장의 수습과정에서 발생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수면장애 발생 등

❍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 요구 증대

- '16년 공사상자수 450명으로 최근 5년간 54.1% 증가
- '15년 특수건강검진 받은 전체 소방공무원 중 62%가 정신이상 판정

❍ 소방전문병원 및 연구기관 설립 제기

- 업무특수성(소방작업의 특수성, 근무의 특수성, 출동체계의 특수성) 감안
- 화상·외상치료, 호흡기 질환, 스트레스 관련 정신질환, 재활치료, 업무 연관 질환 등에 대한 임상실험과 관련 예방대책 수립 및 추적 연구 등을 담당할 연구기관 설립

❍ 소방공무원의 보건복지 관련 법·제도 운영 현황

- '02년 소방전문병원 설립을 위한 '소방병원추진위원회' 출범
- '11년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폐기)
- '14년 소방공무원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폐기)
- '08년~'12년 최근 5년간 경찰병원 소방공무원 이용자는 2.0%에 불과하며, 경찰공무원을 위한 병원으로 전문치료 절차와 대기 시간 등의 문제 발생
- 이에 본인부담으로 일반병원에서 진료 및 치료

❍ 소방전문병원은 소방작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기능의 센터 설립

- 화상환자 응급치료의 기능을 갖춘 화상전문치료센터
- 급격한 현장활동으로 부상이 많은 근골격계질환센터
- PTSD센터, 재활치료센터, 건강증진센터

❍ 부설연구기관의 기능

- 누적된 의료 자료 등을 통한 소방관에게 발병되기 쉬운 질환의 예방대책 수립
- 소방공무원의 입사에서 사망까지의 생애 전주기의 체계적 건강관리 등을 위한 연구와 정책개발 업무 수행

❍ 본 의정토론회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소방업무의 공익적 가치를 수익성만을 기준으로 비교가 적정한가?
- 둘째, 수명이 짧은 소방관에 대한 원인 파악을 위한 현장직원들의 의견을 듣고 그에 대한 치유방안은 무엇인지?
- 셋째, 소방공무원의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
- 넷째, 접근성이 양호하고 기반시설이 양호한 내포지역으로 소방병원 유치 여부 ?
- 다섯째, 국립소방병원 설립 추진의 동력으로 대정부 건의등의 충남도의 방안을 모색하고 소방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

2 지정토론

① 최은숙 (공주대학교 응급구조학과 교수)

❍ 소방공무원 전문치료기관 건립의 필요성 설명

- 소방공무원의 평균 수명 66.5세, 소방대원의 68%가 건강이상
- PTSD, 우울증, 수면장애, 알코올 사용 장애등 일반인에 비해 유병률이 높음

- 중앙 및 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는 전국 67개소 운영중
- 소방공무원의 이용률은 서울소재의 경찰병원에 편중(지방에서의 접근성 떨어짐)
- 소방인력의 부족('16년말 4만 4,293명, 소방기본법상 기준인력 5만 1,714명임)

❍ 소방공무원의 보건복지 실태

- 최근 5년간 순직·공상자는 54.1%증가, 순직자는 구조활동 11명, 화재진압 8명, 공상자는 구급활동 419명, 화재진압 350명임
- 건강검진 상 이상이 있는 소방공무원은 '16년 68.1%로 매년 증가하고 정신과 병원진료와 상담검수는 5년간 10.5배 증가
- 소방관의 유병률은 PTSD 6.3%, 우울증 10.8%, 수면장애 21.9%, 알코올 사용장애 21.1% 등으로 일반인에 비해 유병률이 높음
- 구조·구급활동중 폭행·폭언을 당한 건수는 2.2배증가
- '10년부터 민·형사상 소송에서 화재진압등으로 발생한 기물파손 변상건 54건, 벌집제거중 손실의 보상은 사비로 배상하는 상황 발생

< 소방공무원 유해요인 노출실태 >

구분	유해요인	건강장해
심리적	비상대기 및 긴급출동 위험상황 투입에 따른 스트레스	각종 스트레스 질환
물리적	불안정한 상황 (벽,천장, 바닥의 붕괴 위험)	각종 손상 부상
	화염 등의 고열	고열장해(탈수, 열사병, 순환부전 등) 및 화상
	심각한 노동 강도 인간공학적 위해요소	다양한 근골격계 질환 발생
화학적	화재 현장의 분진, 가스	질식, 호흡기 자극, 암발생

❍ 국립소방전문병원 세부계획('14년 연구결과)

- 설립규모 300병상, 부지 66,000㎡, 연면적 31,950㎡의 종합병원급
- 의사 28명, 간호사 152명, 보건직 59명, 행정 43명, 연구원 10명
- 사업비 957억원(신축 728억, 장비구입 145억, 예비비 87억)

❍ 소방공무원 보건복지 향상 방안 제안

(1) 국립소방전문병원 건립을 위한 역량 결집

- 첫째, 국립소방전문병원 건립에서 경영 효율성 문제는 수익성이 아닌 소방에 대한 공익적 가치 추구
- 둘째, 국가와 지자체의 법률과 제도개선의 뒷받침 필요
- 셋째, 소방전문병원 설립 후보지 선정에 있어서 해당 지자체의 적극적 역할 수행

(2)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 방안

- 첫째, 소방보건의 배치
- 둘째, 맞춤형의 편안한 상담실 운영과 소통의 장 마련
- 셋째, 동료상담사 제도 마련
- 넷째, 중앙 및 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의 적극적 활용
- 다섯째, 대국민 홍보 동영상 제작등 공익광고 활용

(3) 소방공무원의 소송관련 대처 방안

- 첫째, 소방업무 중 발생한 민원과 소송에 대해 소방조직에서 적극적 대처 방안을 마련
- 둘째, 소방전문 변호사 채용

② 유대준(충남도립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교수)

❍ 소방업무에 대한 공익적 가치를 수익성만을 기준으로 하는 비교가 적정한지 여부 검토

- 소방공무원의 보건 복지 향상을 위한 국립소방병원 또는 소방전문치유센터의 설립은 국가적 소임과 책임이라는 공익성에서 정부주도의 설립이 필요함

- 산업재해 일반에 대한 공통분모(화상, 외상치료, 호흡기질환, 정신질환, 재활치료 등)을 국민의 보건을 위해 환원할수 있다면 수익성 이상의 국가적 책무임

❍ 수명이 짧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근본적 원인 파악과 현장 직원들의 의견을 듣고 그에 대한 치유방안에 대해서는

- 순직, 자살 소방공무원 및 우울증, 신변비관, 가정불화등 소방공무원의 불규칙한 근무환경과 공무과정에서의 외상 후 스트레스등이 연관성이 높은 만큼 근무환경의 개선과 화상 등의 재활치료, 정신치료의 병행이 주기적으로 필요함

❍ 소방현장 활동이나 과정 등의 개선을 통한 소방공무원의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으로

-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 지역별로 소방활동 면적과 팀의 세분화된 역할을 고려하여 적합한 인력배치

❍ 현재 국립소방병원 설립은 접근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내포지역으로 유치하자는 의견

- 전체 소방공무원의 접근 용이성과 유치조건을 제시하는 기준에 입각하면 충남도청 인접지역의 기차역이 검토대상이 되어야 함

❍ 중앙정부에 국립소방병원 설립 추진의 동력을 주기위한 대정부 건의

- 소방청 중심의 구립소방병원 설립 추진의 명확성 필요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개정안의 재발의 및 입법 필요

- 일반 국·공립병원에 소방 공무원의 피해를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센터 설립 등 국립소방병원 중심의 소방치료전문센터 확대

③ 주영국(충주세계소방관경기대회 추진단장)

❍ 소방공무원의 현황 자료 제시

- 평균수명 현황, 위험직무 순직 현황(10년간), 공무상 부상자 현황

- 소방공무원 암 발생 현황, 소방공무원 화상환자 중 공무상 요양승인 연도별·지역별 현황

- 국내 화상전문응급의료센터 및 화상질환전문병원 현황
- 연도별 특수건강검진진단 결과자료, 주요 질환별 건강이상자 현황단 결과
- 특수건강진단 정신건강 설문조사 결과, 시도별 자살자 현황자료

❍ 소방병원 건립 기본계획안 제시하고 현 논의가 되고 있는 다양한 논점 제시

- 소방복합치유센터 설립등을 통한 소방관 전문치료 및 재활치료 지원
- '13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 추진(관계부처 반대로 폐기)
- 기획재정부, 소방병원의 수익성 문제 제기
- 대안으로 소방전문치료센터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 '05년 경찰병원을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운영 결정 및 시설과 기능보강

❍ 소방병원의 수익성 제고 방안

- 특수진료과목 중심의 전문질환센터로 전문화와 특수화를 통한 병원의 경쟁력 강화(PTSD, 근골격계 질환(예방→관리→재활) 전문센터 중심의 특화)
- 민간위탁등 운영의 효율성 제고(전문인력의 안정적 공급, 의료기관의 전문 노하우 적극 활용)
- 소방병원내 건강연구소 설치, 특수직무환경에 따른 직업성 질환 역학조사와 기반연구를 통한 효율적 건강관리시스템 구축

④ 한상우(충청남도 서천소방서 현장대응단장)

❍ 최근 이슈, 소방공무원의 공무중 발생한 민간자원의 손실 보상에 대한 설명과 사례 제시 및 소방공무원 개인 보상하는 문제 제기

- '15년~'17년 6월 현재까지 손실보상건수 20건, 보상액 1,732만원
- 대구(북부, 달서), 전남, 서울등

❍ 운영중인 조례 현황 분석

- 소방공무원 안전 조례등 총 33건(보건안전 4건, 공사상자 16건, 장례지원 12건, 물적손실보상 1건)

- 공사상 조례의 경우 보상범위와 지원범위가 각 지자체마다 다름
- 충청남도의 경우는 공사상 조례와 장례식 지원조례 있음

❍ 물건손실보상 조례상의 보상 범위(대구광역시 조례)

- 재난활동, 구조구호활동, 생활안전활동, 소방교육활동, 위험시설의 긴급조치등 구체적으로 손실보상에 대한 활동 범위를 구체화함

❍ 충청남도 소방활동중 발생한 민간의 손실보상에 대한 조례 제정 필요

❍ 소방공무원 인력 보강 문제 제기

-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최소 적정 인력 배치 요구

3 청중토론

❍ 소방병원 건립의 실현가능성과 조기 설치 방안

[질의: 금산 소방서 공무원]

⇨ 현 정부의 공약으로 소방복합치료센터로 추진되고 있으며, '21년 목표로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판단됨

⇨ 조기 설치를 위해서는 충남도민, 충남소방공무원, 관할 지자체등의 포괄적 협력과 지역여론이 중요

[답변 :주영국 충주세계소방관경기대회 추진단장]

❍ 입법부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충청남도 조례로 소방활동중의 민간손실보상에 대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질의: 목천의용소방대원]

⇨ 소방업무와 함께 의용소방대의 역할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손실보상에 관련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답변 :이동우 충청남도금산소방서장]

❍ 본 의정토론회의 좌장이신 이동우 충청남도 금산소방서장의 정리 말씀

⇨ 본 의정토론회에서 논의가 된 주요 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필요성과 중부거점권인 내포지역 설치가능성

둘째, 소방공무원의 정신 건강등 다양한 질환에 대한 제도적 개선책 마련

셋째, 긴급구호 등 소방활동 시 발생할 수 있는 민간의 재산상 손실 보상에 관련한 조례 제정 요구

넷째, 소방인력의 지속적 보강 요구

결과 및 성과

<도출과제>

1. 국립소방전문병원의 설립 필요성과 내포지역 입지 가능성
2. 소방공무원의 정신 건강등 다양한 질환에 대한 제도적 개선책 마련
3. 소방활동시 발생할 수 있는 민간자원의 손실 보상에 대한 조례 제정
4. 소방인력의 지속적 보강의 필요성

⇒ 도출된 과제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통보

<성 과>

- ❍ 국립소방전문병원의 설립 필요성
- ❍ 소방공무원이 격고 있는 다양한 질환에 대한 현황과 제도적 문제점, 해소방안
- ❍ 소방활동시 발생할 수 있는 재산상 손실보상에 관련한 제도적 필요성
- ❍ 소방인력의 지속적 보강 추진

아산지역 마한 · 백제 문화재 활용방안 구상

〈'17. 10. 27.(금), 14:00~16:20 / 아산시 탕정온샘도서관〉

총 평

이번 토론회는 아산지역 마한·백제 문화재의 이해와 지역의 문화자원 활용 방안을 찾아보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 참석자 대부분은 충청남도의회 차원에서 아산의 고대 문화자원을 활용방안을 찾아보기 위해 관심을 가져준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였으며,
- 마한·백제 문화재에 대한 재인식과 향후 관련 문화자원을 폭 넓게 조사, 연구 및 활용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평가

또한, 아산지역 역사문화 자산을 한자리에 모아 전시·교육·연구하는 역사문화 거점으로서의 박물관 건립사업 추진필요성 제기하였음.

주요 토론 내용

1 주제발표

<박순발 교수(충남대학교)>

❍ 대단한 국보급의 청동기가 석곽묘에서 일괄 출토된 것은 아산이 고고학적으로 주목받게 된 주요한 계기, 아산의 문화유산과 분묘군 등 마한의 중심지

❍ 산업화와 정보화오 대표되는 지역발전 및 경제성장은 분명 어느 시점에 도달하면 새로운 모멘텀이 필요할 것이며, 중요한 요소로 지역의 역사문화적 정체성을 들 수 있음.

- 아산 하면 국민 다수가 긍정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역사 이미지로서 마한의 '목지국'은 매우 중요한 지역 역사문화 자원

❍ 아산과 목지국의 관련성을 제기해도 좋을 정도로 청동기시대 이래로 아산의 문화유산 자원은 풍부함으로 이을 잘 활용해 지역이 긍정적인 이미지화 전략에 활용하는 일이 필요한 시점

❍ 아산권에서 출토된 문화유산 가운데 한국사 기술(記述) 상에서 빠지지 않는 중요성을 갖는 것이 적지 않는데, 이들을 한자리에 모아 전시·교육·연구하는 역사적 문화 거점으로 '목지박물관'건립 기대

2 지정토론

① 이경복 연구실장(충남역사문화연구원)

❍ 아산은 풍부한 역사와 문화를 가진 정통의 고장이지만 지역학 연구의 부족, 순천향대학교 아산학연구소에서 많은 성과를 내고 있지만 문헌적 연구에 치중한 점이 아쉬움

- 국토개발사업과 공업단지 조성 등으로 역사적으로 가치 있는 매장문화재가 많이 발굴되었으나, 학술적 연구뿐만 아니라 아산시민들도 모르는 실정

❍ 아산시는 충남에서 천안시와 함께 서북부권의 중심도시로 천안박물관과 같은 시립박물관 필요

- 최근 개발과 함께 사라지는 매장문화재에 대한 연구 성과와 그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공간 필요
- 그에 따른 역사 연구에서 부족한 매장문화재에 대한 연구활동이 풍부해질 수 있다고 판단

② 오규진 소장(가경고고학연구소)

❍ 아산 탕정지역을 필두로 그 인근지역에서 조사·확인된 원삼국시대 및 그 이전시기의 고고유적의 수는 가히 폭발적이라 할 정도로 그 수가 증가 하고 있으며, 가장 규모가 큰 것이 아산 탕정면 명암리 일대의 분묘군으로 마한 최대의 분묘군이라 할 만함

❍ "아산 갈매리 유적에서 드러난 양상은 전통적인 장시(場市)의 모습과 매우 닮았다"며 "저장시설이 많은 점이나 철기·목기가 가공 제작되는 시설이 있는 점은 각처에서 모인 산물이 교역되고, 반제품이 가공돼 제품으로 유통되는 장소로서의 기능과 잘 부합되며, 이러한 점에서 이 유적을 원삼국시대의 장시터로 이해

③ 김경태 책임연구원(충남연구원 문화관광디자인연구부)

❍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여건에 맞는 정책 개발과 발전방향이 모색되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분석과 이를 바탕으로 전략적 경영방식이 도입되어야 할 시점

❍ 지역의 경쟁력은 주로 지역경제의 발전 정도에 따라 평가될 것이기 때문에 각 지역은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지역 고유의 경제 발전 모델을 수립하고, 발전 대안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

❍ 지역주민의 참여가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역사자원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유적지로서의 역사자원에 머무르게 할 것이 아니라 스토리텔링을 중심으로한 문화콘텐츠와 융합이 필요

❍ 과거의 시점에서 머물러 있는 역사자원은 관광객들에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이끌어 내기 어려움으로, 역사자원을 과거에 매어두지 말고 현재로 끌고 나올 수 있는 다양한 시도가 필요

④ 지원구 학예연구사(아산시 문화관광과)

❍ 아산시에서는 조사된 지역을 중심으로 학술발굴 형태로 양호한 마한 유적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것과 이와 아울러 마한 유적의 밀집도가 높은 곡교천 유역에 대한 종합조사가 동시에 필요

❍ 지금까지 조사된 고고자료에 대해 집성된 자료집이 필요하며, 향후 마한 유적과 유물의 활용에 있어 기초자료 확보는 매우 중요한 선별작업

❍ 박물관의 건립은 아산지역의 역사와 문화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며, 다만 지금까지의 일방적인 관주도 방식을 탈피해 민간이 동시에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음

❍ 1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박물관 건립과 관련해 담당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하는 박물관 사전평가제에 대한 대응 준비 필요

❍ 박물관 건립의 당위성을 확보키 위한 전문가들의 관련 연구성과를 많이 도출해 내는 작업이 필요함을 들었다.

❍ 아산지역의 학생층을 대상으로 한 마한 역사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며, 학생층의 교육이야말로 지역의 역사와 문화 자원을 전승·계승·보존시킬 수 있는 확실한 방법 중 하나

⑤ 정채학 학예팀장(천안박물관)

❍ 기획 단계부터 전문적 전담인력 필요

- 건립 논의 관련: 다양한 자문위원 필요(전문가, 관련공무원, 자문위원 등)
- 건물 건립 관련 자문위원과 전시 관련 자문위원 별개
- 전시 관련 자문위원의 경우 관련 전문가와 더불어 전시 전문가 필요
- 이를 조율하고 운영 관리하는 전담 학예연구직 필요

  cf) 통상 학예연구직의 경우 개관 전후 임박해서 채용

❍ 박물관 환경변화와 정책방향 설정 중요

- 현재는 유물관리, 전시보다 교육, 체험 등 더욱 중요시됨

- 유물관리, 전시, 교육 관련 공간의 적절한 배분이 필요

○ 박물관 향후 운영방향 설정 중요

- 보통 건립만 하고 사후 관리운영에 소홀한 경우가 대부분
- 사후 운영방향 설정과 인력, 예산확보 중요

3 청중토론

○ 아산의 곡교천과 물한산성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복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할 것임

○ 삼성에 있는 전시관, 선문대학교의 박물관, 아산의 마한·백제 문화재를 활용해서 복합적인 종합박물관 건립이 용이 할 것으로 보임

[질의: 탕정면 용두리 이장]

⇨ 물한산성, 꾀꼴산성 등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담당자의 요청보다는 시민들이 요청하는 부분이 해결 될 수 있으니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참여가 중요함.

마한박물관이라는 전문박물관적 성격이 아니라 종합박물관으로 건립된다면 예산의 규모를 늘릴 수 있으나 학예연구사 혼자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음으로 주민들의 적극적인 후원이 있어야 함.

선문대학교 연계건은 대학교 박물관이라서 조금은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유물들을 자유롭게 활용하려면 사실 아산지역에 박물관이 있어야 공동으로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것이며 이러한 부분은 향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봄

삼성안에 있는 전시관을 없애달라는 집단민원이 있었고, 사실 마한박물관쪽으로 다른 지역에 건립해서 옮겨지면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 할 것으로 이러한 부분은 삼성에도 좋아할 수 있는 대목으로 추후 삼성과 관련 사항을 긴밀하게 협의하겠음. [답변 : 아산시 문화관광과 지원구 학예연구사]

○ 이미 발굴된 문화재를 위해 박물관을 설치해야 하는데, 도시재생 일을 하다

보니 배방에 위치한 철도 폐선부지 10,000평이 있으며, 시가의 절반 값으로 이 부지가 아산 배방 도시재생과 연계해서 가장 현실적일 것 같으니, 예산을 절감해서 빨리 시행하여 아산 시민들도 박물관 건립 실현되기를 기대

[질의 : 배방도시재생센터 활동가]

⇨ 도시재생사업이 여러 가지 방향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지역을 나누기 보다는 배방과 탕정이 함께 공생하고 생활하는 곳으로 추진하면서 같이 협의하고 의논드리도록 하겠음

박물관 뿐만 아니라 아산은 문예회관도 필요함으로 도시재생을 추진하는 곳에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사업이 필요한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하며, 아산을 넘어 충남에서 중요한 곳으로 발전가능성이 있는 곳임

참여해 주신 분들이 관심을 갖고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 주셔야 박물관 건립이 될 수 있을 것이며 활성화 될 수 있다고 생각

[답변 : 윤지상 의원]

결과 및 성과

<도출과제>

1. 아산의 고대 문화자원의 조사·발굴·연구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방안
2. 아산 지역의 문화자원의 역사적 가치 활용과 향후 지역발전을 위한 개발 및 활용방안 필요

⇒ **도출된 과제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통보**

<성 과>

❍ 아산지역의 고대 문화자원에 대한 이해 및 활용방안에 관한 의견수렴

❍ 박물관 건립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기지시줄다리기 세계화 마케팅 전략 수립

〈17. 10. 30. (월), 14:00~16:00 / 당진시 기지시줄다리기 박물관〉

총 평

금번 토론회는 국가무형문화재(제75호)이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15년 등재)인 기지시줄다리기의 지속가능한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로

- 참석자 대부분은 의회 차원에서 기지시줄다리기의 문화유산 및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융합적으로 고려한 지속가능한 발전방향에 대한 공론의 장을 마련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였으며
- 특히 무형문화유산의 전형보전과 사회변화를 고려한 현대적 계승을 위한 구체적 방안마련을 위해 지속적인 공감대 형성을 통한 정책결정이 가능한 민관협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공유

특히 축제로서의 비일상성(非日常性) 강화, 줄다리기 상품화, 외국인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한 세계화 마케팅 전략수립 등에 있어 지역민의 주인의식 증진, 전문가 및 관(官)의 지원필요성이 있다는 의견 등이 제시됨

주요 토론 내용

1 주제발표

① 정병웅 교수(순천향대)

❍ 뒤르켐의 사회학 이론,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 이론 및 이태리 베니스 가면축제, 스페인의 토마토축제 등 해외 사례를 실증적으로 살펴보면,

- 축제의 가장 큰 특징은 리미노이드(liminoid), 즉 일상(日常)에서 비일상(非日常)으로의 탈출을 의미하는 비일상성임

❍ 과거 우리 시장의 난장(亂場)문화의 가장 큰 특징도 비일상성임

- 참여자들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규범을 벗어나 기존 질서에 대한 감정을 표출함으로써 사회통합에도 기여함

❍ 기지시줄다리기 축제는 농어촌 및 시장의 난장문화에서 출발했다는 점에서 성공적인 축제를 위한 다양한 요소가 내재되어 있음

- 독일 옥토버 축제의 생화학적 요소(술), 이태리 베니스 가면축제, 진주 유등축제의 물리적 요소(가면, 유등) 등 다양한 성공적인 사례 등을 분석, 참조할 필요 있음

❍ 다만, 축제를 통한 문화관광산업화 하는데 있어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 있음

- 축제의 비일상성을 강화, 증폭할 수 있는 방안
- 국내의 영산 줄다리기, 필리핀 등 해외의 줄다리기 문화와 차별화
- 장소의 협소성 문제, 문화관광 축제 미지정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한 충남도와 당진시의 적극적인 지원
- 문화유산에 내재된 교훈적 요소에 너무 집착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 있음

2 지정토론

① 안본환 회장(기지시줄다리기보존회)

○ '15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이후 관광객이 급증하는 등, 기지시줄다리기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있는 바,

- 학예연구사 박물관 상시 근무, 타 박물관과의 교류 등 관련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함

○ 기지시줄다리기는 문화유산 및 관광자원으로서 가치가 융합되어 있으므로, 양자의 고유한 가치를 극대화하여 통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의 필요성

② 조성춘 위원장(기지시줄다리기축제위원회)

○ 기지시줄다리기 축제는 축제에 대한 분석·평가 후 그 내용을 반영하는 등 전통과 현대를 도모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중임

- 특히, 아이와 엄마를 위한 수유공간 마련계획을 수립하는 등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중임

○ 그러나 법인화, 줄다리기 상징 상품개발, 교통문제 등에 대한 충남도와 당진시의 지원이 절실함

③ 정연창 과장(충청남도 문화유산과)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신청시 제시했던 3대 요소를 보존, 계승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방안 마련 필요

- 특히, 유네스코 재심사시 결격사유에 대하여 유의하여야 함
- 당진시민의 주도적 참여, 증강현실 등 4차 산업혁명기술 연계, 전담지원 조직 확대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특히, '14년 제정·시행된 「당진시 기지시줄다리기 지원 조례」를

개정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 및 통일줄다리기 행사 등 통일정책과 연계가능한 방안 등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 필요함

④ 설기호 과장(충청남도 관광마케팅과)

❍ 기지시줄다리기 축제의 장점에 대한 다각도의 연구를 통하여 이를 육성, 지원하는 방안 마련 필요함

❍ 관광마케팅이라는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 있음

- 관광의 현대적 경향은 가족단위 관광객이 증가하는 것임. 따라서 가족 또는 아이 중심의 콘텐츠 개발
- 기지시줄다리기의 문화유산 및 축제적 요소를 청소년 교육과 연계
- 수도권 등 타 지역민의 방문이 용이하도록 축제시기 조정
- 문화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요소인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및 살거리(상품화)에 대한 개별 및 융합적 고려

⑤ 김경태 책임연구원(충남연구원 문화관광디자인연구부)

❍ 기지시줄다리기 축제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이후, 보존 위주 정책에서 문화관광산업적 요소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중임

❍ 관광산업적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지역 주민의 실질적 참여 유도를 통한 사회통합. 예를 들면, 축제 참여에 수신(修身)이라는 브랜드 이미지화를 통하여 참여만으로 자긍심 유도가능 함
- 경제적 가치 증진을 위한 상품화
- 외국인 관광객의 수용성 증진을 위한 연구 필요. 특히, 외국인 관점에서 이해증진을 위한 다양한 안내, 홍보 필요
- 축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단기적으로 축제전문가를 초빙하고, 중·장기적으로 지역주민을 축제전문가로 육성할 필요 있음

⑥ 박종희 과장(당진시 문화관광과)

❍ 기지시줄다리기는 '70년대 도(道) 문화재 지정 이후 '15년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까지 지속적으로 발전해옴

❍ 향후 공주·부여의 백제문화제, 금산 인삼축제처럼 도(道)의 대표 문화축제가 될 수 있도록 지원·육성하겠음

- 특히, 축제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제안에 대해 검토 중임
- 일상성과 비일상성의 경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공감

❍ 다만, 축제와 관련하여 마을 주민의 주인의식의 실질적 증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3 청중토론

❍ 유네스코 재심사의 관련 내용, 문화관광상품으로서 경쟁력 강화 및 줄다리기의 상품화와 관련한 구체적 방안은 무엇인가?

[질의: 지역주민 1]

⇒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기준은 문화유산으로서의 독창성 및 보편성이며, 5년 단위로 재심사가 이루어짐. 또한 현재 각국이 연 2건 등재신청 가능하나 내년부터 연 1건으로 등재신청요건 강화됨. 따라서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신청시 제시했던 3가지 요건에 대한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을 강구하여 재심사시 탈락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답변: 정연창 과장]

⇒ 상품화와 관련하여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업 중요함. 또한 해외여행상품화 관련하여 한국관광공사 및 충남도의 많은 정보 및 노하우를 활용할 필요 있음

[답변: 김경태 책임연구원]

⇒ 기지시줄다리기의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는 유네스코 등재로

인정됨. 그러나 관광산업적 관점에서 축제의 시기적 측면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답변: 설기호 과장]

❍ 기지시줄다리기는 문화재로서 원형보전의 가치와 축제 등 관광산업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현대적 변화의 필요성이 측면이 공존함. 이에 양자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이 필요함

[의견: 지역주민 2]

⇒ 유형문화유산은 원형유지를 요건으로 하나, 무형문화유산은 전형유지를 요건으로 하여 현대적 변화의 가능성이 부정되지 않음

[답변: 정연창 과장]

⇒ 기지시줄다리기는 문화유산 보전에서 출발하여 현재 관광산업화와 접목중임. 현재 기지시줄다리기는 문화유산 보전측면에서 지원하고 있음. 축제에 대한 지원은 관련 요건충족시 신청 가능함. 그러나 도(道)의 문화체육관광국의 관점에서 하나의 대상에 대한 문화유산 지원과 관광산업지원을 병행하기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음.

[답변: 설기호 과장]

❍ 현재 4차례의 기지시줄다리기 관련 토론회가 개최되었으며, 전문가의 반복된 조언에 관심을 가져야 함. 특히 다음과 같은 점에 주목해야할 필요 있음

- 지역주민의 주인의식 증진,
- 외국인 관점에서 세계화를 위한 마케팅 전략 수립
- 줄다리기 소재 상품개발 필요성,
- 통일줄다리 등 통일정책과 접목가능성.
- 앞으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기지시줄다리기의 세계화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다양한 논의 및 연구를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음

[좌장 김명선 의원]

결과 및 성과

<도출과제>

1. 기지시줄다리기의 문화유산적 측면 및 관광산업적 측면을 융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증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보다 면밀한 연구 필요
   - 무형문화유산의 전형보전과 사회변화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현대적 변화가능성의 융합문제, 교훈적 요소 집착 지양
   - 특히 유네스코 재심사와 관련하여, 인류무형문화유산의 기준 및 가치 보전·계승에 관한 실제 사례를 통한 실증적 연구
2. 세계화 마케팅 전략수립 방향과 관련하여,
   - 우리 전통시장의 난장(亂場)문화에 입각한 비일상성(非日常性) 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마련을 위한 민관협력,
   - 지역주민의 주인의식 실질적 증진방안,
   - 국·내외 줄다리기 문화와 차별화,
   - 인근 지역의 문화적 장점(예: 면천 막걸리)과 연계 방안 마련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3. 기지시줄다리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구축

⇒ 도출된 과제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통보

<성 과>

- ❍ 기지시줄다리기의 지속가능한 발전방향에 대한 공감대 형성
- ❍ 무형문화유산의 현대적 보전 및 계승을 위하여 지역민의 적극적 참여, 전문가 및 관(官)의 유기적 지원을 위한 민관협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 구체적으로 줄다리기 관련 상품화, 지역민의 축제전문가 육성 및 세계화를 위한 마케팅 전략 수립 등의 영역에 있어서 민관협치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고양

타 시 · 도 의회 주요 동향

대구광역시의회

전통시장 활성화 다각도로 모색되어야!

- 대구광역시의회 「대구 전통시장 살리기와 사회적경제」 세미나 개최 -

대구광역시의회는 지역문화의 중심이자 소통의 공간인 '전통시장'의 생존과 지속적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일(월) 오후 3시부터 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대구 전통시장 살리기와 사회적경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 세미나를 주관한 류규하 대구광역시의회 의장은 "오랜시간 지역 문화의 중심지이자 지역민들의 소통공간으로 자리잡은 우리 '전통시장'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장소가 아닌, 지역문화의 흥망성쇠(興亡盛衰)를 좌우하는 곳"이라며 전통시장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오늘날 다각도로 논의되고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중 청년들의 아이디어와 상상력, 그리고 다양성이 함께 공존하는 최근 전통시장들의 성공사례를 말하며 대구시도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 수립시 이를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세미나에서 좌장으로 토론을 주관한 오철환 의원(대구광역시의회 경제환경위원장)은 "최근 지역의 전통시장들은 글로벌 명품시장, 문화관광형시장, 골목형시장 등 다양한 정책들을 통해 줄곧 감소 추세였던 전통시장의 매출액이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전통시장은 50대 이상 소비자가 70%를 넘고, 상인들의 평균연령도 60대를 바라보고 있다"고 밝히고, "앞으로, 대구시가 청년들과 젊은 주부들이 더 많이 찾을 수 있는 젊고 특별한 전통시장을 만들기 위해, 편리한 쇼핑 환경과 상품구성의 다양화, 카드 및 모바일 결재, 위생과 친절 등 기본적으로 개선해 가야 할 사안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세미나에서는 지역전통시장 활성화 일선에서 오랜 기간 연구해 온 곽주완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 본부장을 초청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원칙의 재정립」이라는 주제로 지역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선진사례들을 살펴보고 대구시 현실에 맞는 정책대안을 모색했다.

아울러 의회 내부의 논의와 시각에만 머무르지 않도록 공정갑 교동시장 상인회장, 박재일 영남일보 편집부 부국장, 김경민 대구YMCA 총장, 김재현 사회적기업 웰텀즈 대표, 정기영 대구광역시 민생경제과장 및 관계 공무원까지 참석을 확대하여 정·관·학계가 함께 머리를 맞대어 지역 전통시장 활성화의 미래에 대해 진정성 있고 다양한 논의를 펼침으로써 실효성 있는 처방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울산광역시의회

'2017년 민간단체 대표 초청 간담회' 실시

시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윤시철 의장과 정치락 운영위원장, 이영우 의회사무처장 등 시의회 관계자와 권의호 새마을지도자 울산광역시협의회 회장 등 민간단체 대표자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민간단체 대표 초청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는 민간단체의 주요현안과 애로사항 청취를 통해 의회와 민간단체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자리로, 각 민간단체의 사업 내용 소개와 각종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토의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서, (사)울산환경문화예술협회 이명숙 회장은 태화강 대공원 인근에 게스트하우스 설치를 건의 했고, 건강드림 7330 자원봉사단 김찬수 단장은 전국체전에 울산시 선수단에 대해 가족단위 응원단만 있으나, 울산시 차원에서 응원단을 구성하여 우리시 선수들의 사기를 진작 할 필요가 있음을 건의했다.

또한, 울산시 아동위원협의회 천정기 부회장은 울산시내 주차난이 매우 심각하여 응급차량 통행이 어려울 때가 많다며, 노인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주차 계도 및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정치락 의회운영위원장은 "민간단체 대표와 회원들의 노고에 대해 감사드리며, 특히 간담회 중 제기되었던, 교통,주차 관련 건의사항과 예산 지원 건의는 시 소관부서와 협의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시철 의장은 "오늘 이 자리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묵묵히 현장에서 봉사를 실천하고 있는 민간단체 대표를 초청하여, 그동안 활동 사항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함이다"며, "오늘 단체 대표들의 조언과 질책, 건의사항은 충분히 검토해 의정 활동에 반영하고, 시 관련 부서에도 통보토록 하겠다. 앞으로도 민간단체와 자주 소통하며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상남도의회

사회복지연구회 세미나 개최

- 지방분권시대와 지역복지의 민 · 관 협력방안 -

경상남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사회복지연구회(회장 이성용 의원)는 11월 21일(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경남종합사회복지관 신관 강당(창원시 구암동 소재)에서 공무원, 사회복지단체 관계자, 도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분권시대와 지역복지의 민·관 협력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경상남도 지역복지관 설립 30주년 기념으로 우리도 최초의 지역복지관인 경남종합사회복지관에서 도의회 사회복지연구회와 경남종합사회복지관이 공동으로 개최하게 되었다.

정부의 자치분권 정책과 더불어 지역차원에서 민간 부문의 복지 참여가 증가됨에 따라 확대되는 복지 서비스 전달과 의사결정 과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협의회, 공동모금회, 사회복지시설 등 다원화 되어 있는 서비스 주체간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유기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개최하였다

세미나는 조흥식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주제발표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로드맵과 지역복지 전달체계를 살펴보고,

실무중심 네트워크 강화, 지역복지서비스 거점센터로서의 사회복지관의 역할과 기능 재조정 등 민·관협력 방안을 제시하였고, 이어서 정재욱 창원대 사회복지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이성용 경상남도의회 사회복지연구회장, 신용규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사무총장, 조윤제 경남신문 정치부장, 이승용 두산중공업 사회공헌부장, 신병권 창원시 사회복지과장 등 여러 분야 토론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이성용 경상남도의회 사회복지연구회 회장은"지역사회복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민·관 협력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지역 내 사회복지 관계자들이 더욱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활성화하여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2017 제주교육포럼 정책토론회 개최

- 고교 무상교육 및 무상급식의 확대방안 모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강성균)은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교 무상교육 및 무상급식의 확대방안 모색』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도의회 임시회에서 강성균 위원장이 고교 무상급식과 무상교육 실시에 대한 5분 발언으로 촉발된 제주교육 복지의 방향성에 대하여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발제자로 나선 경기대학교 하봉운 교수는 고교 무상교육과 무상급식 시행과 관련하여 지방교육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 법령의 재정비 등 선행과제를 제시하고, 지방분권시대의 주요정책 실행은 지방정부의 책임성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고교 무상교육과 무상급식의 확대는 시행시기, 소요재원 및 조달방식 등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거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강성균 위원장은 제주도교육청이 추진하는 고교무상교육 정책에 동의하면서도 논의의 중심에 무상급식이 배제된 것에 대하여 아쉬움을 토로하였다.
강 위원장은 "도내 전체 유·초·중학교와 고등학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무상급식은 시대적 상황에 맞춰

고등학교 전학생까지 확대 적용하여 학부모의 교육비부담 해소와 급식운영의 내실화 및 안전성을 도모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번 정책토론회를 계기로 고교무상급식에 대한 도민의 공감대를 얻고 조기시행을 위한 정책 당국자의 의지를 끌어내는 기회가 될 것을 강조하였다.

토론에는 하진의 에듀&힐링연구소 소장을 좌장으로 하여, 김순관 도교육청 교육국장, 이덕난 국회 입법조사연구관, 황경남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장, 조은정 참사랑실천 학부모회장, 고동수 제주신보 편집국장 등이 토론자로 나서 고교 무상교육 및 무상급식의 필요성과 당면과제에 대한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최근 제 · 개정 법령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 2017.1.1.] [법률 제14450호, 2016.12.20.,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및 관련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을 설치함으로써 분담금을 투명하게 관리·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의 설치(제39조의11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및 관련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을 설치함.

나.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의 조성 및 용도(제39조의12 신설)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은 피해지원사업 분담금과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을 재원으로 조성하되,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보상 및 자동차사고로 인한 중증 후유장애인 등에 대한 지원 등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 및 자동차사고로 인한 부상자 등에 대한 재활지원사업 등의 용도에 사용하도록 함.

다.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의 관리·운용(제39조의13 신설)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의 관리주체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되,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사무 중 그 일부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보험회사 등 또는 보험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17.7.18.] [법률 제14552호, 2017.1.17.,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물자동차는 승용차에 비해 차체가 크고 적재화물의 무게로 중량이 무거워 추돌 사고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운전능력, 운전경력, 교통법규 준수 등에 있어 일반 운전자에 비해 엄격한 자격이 요구됨.

이에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음주운전으로 2회 적발 후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 및 음주운전으로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관리함으로써 도로 이용자들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8.1.1.] [대통령령 제28442호, 2017.11.21., 제정]

□ 개정이유

지하를 개발·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반침하 및 지반침하에 따른 인명·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지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하안전영향평가 및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3749호, 2016. 1. 7. 공포, 2018. 1. 1. 시행)됨에 따라,

지하시설물 및 지하정보의 범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집행계획 및 관리계획의 수립 시기 및 절차, 지하안전영향평가·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및 지반침하위험도평가의 대상사업, 평가·조사의 항목 및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하시설물 및 지하정보의 범위(제2조 및 제3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적용되는 지하시설물의 범위를 수도, 하수도, 전기설비, 전기통신설비, 가스·에너지 공급시설과 도로, 철도시설, 주차장, 건축물 등으로 하고, 지하정보의 범위를 지질·시추(試錐)·관정(管井) 정보 및 지하시설물의 현황에 관한 정보로 정함.

나.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집행계획 및 관리계획(제4조부터 제7조까지)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의 육성·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도별 집행계획을 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관할 지역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기본방향 등이 포함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하개발사업자 등에게 통보하도록 함.

다. 지하안전영향평가 및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제13조, 제23조 및 별표 1)

도시개발사업,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등이 깊이 20미터 이상의 굴착공사를 수반하거나 산악·수저(水底) 터널 외의 터널 공사를 수반하는 경우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해당 사업이 굴착깊이 10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에 해당하는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라. 지하안전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검토(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및 별표 3)

1) 지하안전영향평가서에 사업 대상지역의 지반·지질 현황, 굴착공사에 따른 지반안전성 검토 및 지하안전확보방안 등이 포함되도록 함.

2) 국토교통부장관은 지하안전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내용의 타당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승인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승인기관의 장 등은 사업계획 등을 확정 또는 승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협의 내용의 반영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

3) 사업계획 등의 최대 굴착깊이가 3미터 이상 증가하거나 굴착면적이 3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사업계획 등에 따른 지하안전 확보방안이 포함된 재협의 요청서를 제출하도록 함.

마.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제21조, 별표 4 및 별표 5)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에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및 지하안전 확보방안의 이행 여부 조사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해당 조사는 지하안전영향평가서에 따른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실시기간에 하도록 함.

바. 지하정보통합체계·지하안전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제34조 및 제42조)

1) 지하정보의 변경 이력, 지하개발사업자·지하시설물관리자 등에 관한 정보 및 지하정보와 연계·활용하기 위한 지상정보 등을 지하정보통합체계에 포함하도록 함.

2) 국토교통부장관은 지하안전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지하안전기술 관련 정보·자료의 수집·관리 및 지하안전정보체계 표준화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지하안전정보체계를 통한 자료의 제출방법 및 처리절차 등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사.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1) 면적 4제곱미터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지반침하가 발생하거나 지반침하로 인하여 사상자가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등에는 사고조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되, 해당 위원회는 구성을 마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도록 함.

2) 중앙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조사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 사고개요 및 사고원인의 분석 등을 포함한 사고조사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MEMO

의 정 정 보

❖ 발 행 일 : 2017년 11월
❖ 발 행 처 :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
❖ 연 락 처 : (041) 635-5123
❖ 홈페이지 : http://council.chungnam.go.kr